

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출자 : 자치행정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. 23. (남양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2009. 3. 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65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09. 3. 9.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경제산업국장)

가. 개정이유

-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함

나. 주요골자

-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 의한 세율로 한자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0조의3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 - 회의록 참고

4. 심사중 논의된 사항 : 별다른 의견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 끝.